

#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

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)



## 분류체계 개편

질환별 특성(물/식품매개, 예방접종대상 등)에 따른 군(群)별 분류에서 심각도·전파력·격리수준을 고려한 급(級)별 분류로 개편

· (개정 전) 제1군~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→ (개정 후) 제1급~제4급감염병 총 86종

- ① 바이러스성 출혈열(1종)을 개별 감염병(에볼라바이러스병, 마버그열, 라싸열, 크리미안콩고출혈열, 남아메리카출혈열, 리프트밸리열)으로 분리·열거
-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(표본감시대상)으로 변경
- ③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

### 1급 (17종)

전수감시  
발생 즉시 신고

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
- 가. 에볼라바이러스병
- 나. 마버그열
- 다. 라싸열
- 라. 크리미안콩고출혈열
- 마. 남아메리카출혈열
- 바. 리프트밸리열
- 사. 두창
- 아. 페스트
- 자. 탄저
- 차. 보툴리눔독소증
- 카. 야도병
- 타. 신종감염병증후군
- 파.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
- 하.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
- 거.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
- 네. 신종인플루엔자
- 더. 디프테리아

### 2급 (20종)

전수감시  
24시간 이내 신고

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

- 가. 결핵
- 나. 수두
- 다. 홍역
- 라. 콜레라
- 마. 장티푸스
- 바. 파라티푸스
- 사. 세균성이질
- 아.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
- 자. A형간염
- 차. 백일해
- 카. 유행성이하선염
- 타. 풍진
- 파. 폴리오
- 하. 수막구균 감염증
- 거.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
- 네. 폐렴구균 감염증
- 더. 한센병
- 러. 성홍열
- 머.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(VRSA) 감염증
- 버.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(CRE) 감염증

※ 2020년 7월 1일자로 E형간염 추가 예정

### 3급 (26종)

전수감시  
24시간 이내 신고

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

- 가. 파상풍
- 나. B형간염
- 다. 일본뇌염
- 라. C형간염
- 마. 말라리아
- 바. 레지오넬라증
- 사. 비브리오패혈증
- 아. 발진티푸스
- 자. 발진열
- 차. 쯤쯤가무시증
- 카. 렙토스피라증
- 타. 브루셀라증
- 파. 공수병
- 하. 신종후군출혈열
- 거. 후천성면역결핍증(AIDS)
- 네. 크로이츠펠트-야콥병(CJD) 및 변종크로이츠펠트-야콥병(vCJD)
- 더. 황열
- 러. 덩기열
- 머. 큐열
- 버. 웨스트나일열
- 서. 라임병
- 어. 진드기매개뇌염
- 저. 유비저
- 처. 치쿤구니야열
- 커.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(SFTS)
- 터. 지카바이러스 감염증

### 4급 (23종)

표본감시  
7일 이내 신고

제1급~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

- 가. 인플루엔자
- 나. 매독
- 다. 회충증
- 라. 편충증
- 마. 요충증
- 바. 간흡충증
- 사. 폐흡충증
- 아. 장흡충증
- 자. 수족구병
- 차. 임질
- 카. 클라미디아감염증
- 타. 연성하감
- 파. 성기단순포진
- 하. 첨규곤달롬
- 거.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(VRE) 감염증
- 네.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(MRSA) 감염증
- 더. 다제내성녹농균(MRPA)감염증
- 러.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(MRAB)감염증
- 머. 장관감염증
- 버. 급성호흡기감염증
- 서.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
- 어.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
- 저.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



## 신고방법

심각도·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

### 개정 전

-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



### 개정 후

- **질병관리본부장\*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·전화**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

\*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·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(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-719-7878 연락)

## 벌칙강화

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·신고 의무 위반, 거짓 보고·신고 및 보고·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

### 개정 전

- 벌금 200만원 이하



### 개정 후

- (제1,2급감염병) 벌금 **500만원** 이하
- (제3,4급감염병) 벌금 **300만원** 이하

## 신고의무자 확대

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, **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**

### 개정 전

- 의사, 한의사



### 개정 후

- 의사, **치과의사**, 한의사

##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

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(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) 중 **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“증상”문구 삭제**

### 개정 전

-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



### 개정 후

- **감염력이 소멸**